

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이윤희 의원입니다.
  
- 본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  
- 현재 음수대를 설치하여 사용 중인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, 경미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이 감면액을 이용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관리하거나 자체적으로 음수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자체 관리보다는 용역을 통한 음수대 관리 시 지적이 더 낮게 나오고 있고 상당수 학교의 경우 수도요금 감면 없이 음수대 유지관리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조례에 반영하여 효과적인 음수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  
「서울특별시 수도조례」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 중 음수대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하는 경우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
  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